

사 업 장 명		대 표 자 (안전보건관리책임자)	
소 재 지	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업 종	(근로자수:)	전 화 번 호 (팩 스 번 호)	

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점검표



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

→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여부

☐ 설치 ☐ 미설치



[크기] 최소 바닥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

→ 최소 바닥면적 6㎡ 이상,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2.1m 이상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였는지 여부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[위치]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설치

→ 휴식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곳에 설치

*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% 넘지 않는 곳에 위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화재폭발, 유해물질, 분진 및 소음 노출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온도·습도·조명·환기 적정 기준 준수

→ 적정 온도(18~28도)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가능 설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적정 습도(50~55%)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가능 설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적정 조도(100~200럭스)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가능 설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비품 구비 및 관리

→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관리 담당자 지정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목적 외 사용금지

→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